

〈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(2025. 2. 11.)에 따른 적용례〉

-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나 개정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(다태아 120일)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과,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(20일, 다태아 25일)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사용 가능.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개정 예규에 따른 횟수(3회, 다태아 5회)에서 종전 예규에 따라 나누어 사용한 횟수를 공제함

〈예시〉

- ① 개정규정 시행 전 5일 사용하고 개정규정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(다태아 120일)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, 출산일로부터 120일(다태아 150일) 이내에 추가로 15일(다태아 20일) 사용 가능
- ② 개정규정 시행일이 휴가 사용일 10일(다태아 15일)차고 출산일로부터 90일(다태아 120일)째인 경우, 출산일로부터 120일(다태아 150일) 이내에 추가로 10일 사용 가능
- ③ 개정규정 시행 전 10일(다태아 15일) 모두 사용하였으나 개정규정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(다태아 120일)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, 출산일로부터 120일(다태아 150일) 이내에 추가로 10일 사용 가능
- ④ 개정규정 시행 전 10일(다태아 15일) 모두 사용하고 개정규정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(다태아 120일)이 경과한 경우, 확대된 휴가일수 적용 불가
- ⑤ 개정규정 시행 전 5일(다태아 10일) 사용하였으나 개정규정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(다태아 120일)이 경과한 경우, 확대된 휴가일수 적용 불가

-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(사망일 또는 장례일) 또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
※ 장례일로 변경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

- 【사례1】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, 화, 수, 목,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
- 【사례2】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
- 【사례3】 목요일 정규근무 종료 후 퇴근한 뒤 부모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기는 금, 다음 주 월, 화, 수, 목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
- 【사례4】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부터 다음주 화요일 까지(3일) 또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(3일) 휴가를 얻을 수 있음

- 【사례5】 2025년 2월 20일(목) 배우자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, 사유 발생즉시 사용하지 않고 5월 27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6월 19일(목)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(17일), 120일이 초과되는 6월 20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
- 【사례6】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가 가능한지? (교원휴가 관련 질의답변 사례집(2022.2월, 교육부))
 - ☞ 경조사휴가는 직계혈족 또는 법률상 가족 관계로 등록된 경우에 사용이 가능
 - ☞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경우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, 가족관계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님 등 가족에 대한 경조사휴가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.